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최민규 의원 외 32명

나. 의안번호 : 제2181호

다. 제출일자 : 2024. 10. 15.

라. 회부일자 : 2024. 10. 18.

2. 제안사유

- 최근 급격히 증가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 이용으로 공유 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에 따른 무질서한 방치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방해받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특히,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의 통행에도 장애

를 초래하여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 및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조치에 따른 비용을 소유자나 대역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 나.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분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 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분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23. ~ 10. 2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수정가결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음
 - 안 제14조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장에게 안 제15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의 이동·보관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제하는 사항을 넘어설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안 제14조를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보행자전거과-6731(2024.10.30.)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공공장소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시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억제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무단방치 금지 관련(안 제14조 신설)

- 안 제14조는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보행안전과 차량의 원

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 장치를 무단 방치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무단방치 처분 관련(안 제15조 신설)

- 안 제15조제1항은 동 개정안 제14조의 무단방치 금지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제35조2) 및 제36조3)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을 적용하고 관련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현행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같은 법 제32조4)부터 제34조5)에서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교차로·횡

2)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3) 「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4)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이하 생략 -

단보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터널안 및 다리 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위반한 차에 대한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안 제15조제1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도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 광범위한 지역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교통법」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처리 규정을 인용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인 ‘법률 유보의 원칙⁶⁾’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할 것임

- 아울러, 안 제15조제2항의 경우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의 위임없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위법령의 근거를 검토하여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6)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